



고용노동부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세무사회		결재	
접수일시	2016-11-11	지시사항	
접수번호	2222		
주무과			
담당자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법정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 ◆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74조)
- ◆ 법정기간 이외 기간(임신 12주 초과 ~ 36주 이하)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업주는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임신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근무(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허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내용: ① 전환장려금 월 40만원, ② 간접노무비(중소·중견) 월 20만원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 02-2004-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리플렛 1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1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무관

전소영

과장

전결 2016. 10. 28.
최난주

협조자

시행 기업지원과-3510

(2016. 10. 28.)

접수

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 seoul.moel.go.kr

전화번호 02-2004-7377

팩스번호 -

/ mode72@moel.go.kr

/ 대국민 공개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이 일어갑니다.